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05
----------	------

제출년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도시계획세 등 과세표준이 상승(5~10%p)하여 보유세 부담 상승의 문제가 전국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함 (안 제3조)
- 나.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함 (안 제10조, 안 제53조, 제55조의3, 제61조)
- 다.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함 (안 조례 제4293호 부칙 제2조)
- 라. 그 밖에 지방세법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 (안 제51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제55조의2)

□ 참고자료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세 균등분
4. 지방소득세 소득분
5. 자동차세
6. 주행세
7. 지방소비세
8. 담배소비세
9. 도축세
10. 레저세

제3조제4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지방소비세

제10조 단서 중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주행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51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등할”을 “법 제17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각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장”을 “사업소”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5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

제55조의3(세율)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장제5절의 제목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① 시장은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법과 영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4조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156조제2항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조례 제4293호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 (생략)</p> <p>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세 2. 등록세 3. 주민세 4. 자동차세 5. 주행세 6. 농업소득세 7. 담배소비세 8. 도축세 9. 레저세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설></p> <p>③ (생략)</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군지역에 적용하는 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통세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세 나. 등록세 다. 면허세 라. 레저세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설></p> <p>2. (생략)</p>	<p>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 3. 주민세 균등분 4. 지방소득세 소득분 5. 자동차세 6. 주행세 7. 지방소비세 8. 담배소비세 9. 도축세 10. 레저세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나. --- 다. --- 라. --- 마. 지방소비세 <p>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과세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u>주행세와 담배소비세</u>는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한다.</p> <p>②~⑤ (생략)</p> <p>제2장 보통세</p> <p>제3절 주민세</p> <p>제51조 (납세의무자) ① <u>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② <u>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u></p>	<p>제10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 ----- ----- ----- -----<u>주행세, 담배소비세 및 지방소비세</u>-----.</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2장 보통세</p> <p>제3절 <u>주민세 균등분</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u>균등</u> <u>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u> <u>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u> <u>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u></p> <p>제53조 (세율) ① <u>균등할의 세율은</u> <u>다음 각호와 같다.</u></p> <p>1. 개인 가. 시내에서 주소를 둔 개인 4,500원 나. 시내에 <u>사업장</u>을 둔 개인 50,000원</p> <p>2. (생략)</p> <p>② <u>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u></p> <p>1. <u>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u> 2. <u>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u> 3. <u>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u></p>	<p><삭제></p> <p>제53조(세율) ① <u>법 제176조제1항</u> <u>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u> <u>주민세 균등분</u>----- -----.</p> <p>1. -- 가. ----- 나. --- <u>사업소</u> -----</p> <p>2. (생략)</p> <p><삭제></p>
<p>제54조 (신고 및 납부) ① <u>법인세</u> <u>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u> <u>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당해</u> <u>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u> <u>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u> <u>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u> <u>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u> <u>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u> <u>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u> <u>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각각 1월)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2000-03-27>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현 행	개 정 안
<p>③ <u>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④ <u>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u>제55조 (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p> <p>제55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u>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④ <u>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u></p> <p><u>제55조의3(세율)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u> <u>2.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u>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u>농업소득세</u></p> <p>제61조 (납세의무자) ① <u>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② <u>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③ 「<u>농업·농촌기본법</u>」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u>같은 세대 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u>지방소비세</u></p> <p>제61조(지방소비세 <u>납입확인</u>) ① <u>시장은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납입관리자로부터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납입관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u>제62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p><삭제></p>
<p><u>제63조 (개간·간척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를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삭제></p>
<p><u>제64조 (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② <u>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u></p> <p>③ <u>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u></p> <p>제65조 (과세표준) ① <u>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u></p> <p>② <u>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u></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u>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u></p> <p>④ <u>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 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u></p> <p><u>제66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u></p> <table border="1" data-bbox="180 1252 785 1767"> <thead> <tr> <th data-bbox="180 1252 483 1310">〈과세표준〉</th> <th data-bbox="483 1252 785 1310">〈세 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80 1310 483 1402">400만원 이하</td> <td data-bbox="483 1310 785 1402">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td> </tr> <tr> <td data-bbox="180 1402 483 1494">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483 1402 785 1494">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td> </tr> <tr> <td data-bbox="180 1494 483 1585">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483 1494 785 1585">72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td> </tr> <tr> <td data-bbox="180 1585 483 1677">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td> <td data-bbox="483 1585 785 1677">672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td> </tr> <tr> <td data-bbox="180 1677 483 1767">8천만원 초과</td> <td data-bbox="483 1677 785 1767">1천872만원+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p><삭제></p>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 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현 행	개 정 안
<p>제67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69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70조 (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의 농업소득금액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71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구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④ <u>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영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경우 및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54조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제15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p>	<p>제154조 (납세의무자) ----- ----- ----- ----- ----- ----- ----- ----- ----- ----- ----- -----</p> <p><u>주민세 균등분</u> ----- ----- ----- ----- ----- ----- -----</p> <p>제15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p>

현 행

개 정 안

구분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40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u>주민세균등할</u> 세액	구지역 100분의25 군지역 100분의1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2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3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50

구분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40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u>주민세균등분</u> 세액	구지역 100분의25 군지역 100분의1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2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3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50

제156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생략)

② 군수·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 징수한다.

부칙<2009-06-01 조례 제4293호>

제1조(생략)

제2조(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적용기한) 제109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생략)

제156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생략)

② -----
주민세균등분-----

-----.

부칙<2009-06-01 조례 제4293호>

제1조(생략)

제2조(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적용기한) -----
-----2009년도 및 2010년도-----

-----.

제3조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 제159조의4(특별징수의무자) ○ 제159조의7(납입) ○ 제172조(정의) ○ 제173조(납세의무자) ○ 제176조(세율) ○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 제176조의8(정의) ○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 제176조의12(세율) ○ 제177조(징수방법) ○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제237조 (세율) ○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p style="text-align: center;">“붙 임 참 조”</p> <p><input type="checkbox"/> 「지방세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8조(납입관리자) ○ 제111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p style="text-align: center;">“붙 임 참 조”</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 계 법 령 발 취 사 항

□ 「지방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세
- 다. 레저세
- 라. 주민세
- 마. 자동차세
- 바. 주행세
- 사. 삭제 <2010.1.1>
- 아. 담배소비세
- 자. 도축세
- 차. 지방소득세
- 카. 지방소비세

2. 목적세

- 가. 도시계획세
- 나. 공동시설세
- 다. 지역개발세
- 라. 지방교육세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10.1.1>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세
- 다. 면허세
- 라. 레저세
- 마. 지방소비세

2. 목적세

- 가. 공동시설세
- 나. 지역개발세
- 다. 지방교육세

[舊法]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개정 1999.12.28, 2000.12.29, 2001.12.29>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세
- 다. 레저세
- 라. 주민세
- 마. 자동차세
- 바. 주행세
- 사. 농업소득세
- 아. 담배소비세
- 자. 도축세

2. (생략)

②도세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29, 2001.12.29>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세
- 다. 면허세
- 라. 레저세

2. (생략)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장제1절제3관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3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중업원분은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본조신설 2010.1.1]

제159조의4(특별징수의무자) 제159조의3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본조신설 2010.1.1]

제159조의7(납입)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이하 "납입관리자"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각 도지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제17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사업주"란 시·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5.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1.1]

제173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2010.1.1>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176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12.14, 1993.12.27, 1994.12.22, 1995.12.6, 1998.12.31, 2010.1.1>

1. 개인의 세율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0,000원

2. (생략)

② 삭제 <2010.1.1>

③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0.1.1]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② 시장·군수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분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1.1]

제177조(징수방법) 소득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및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2000.12.29, 2003.12.30, 2005.12.31, 2010.1.1>

②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997.8.30, 1999.12.28, 2003.12.30, 2005.12.31, 2010.1.1>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삭제 <1999.12.28>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3.12.30, 2010.1.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1999.12.28, 2003.12.30, 2010.1.1>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분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31, 2010.1.1>

제177조의3(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제177조의2 및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제17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2006.12.30, 2010.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1.1>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12.31, 2010.1.1>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5.12.31, 2008.2.29, 2010.1.1>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1.1>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제237조 (세율) ①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05.1.5>

②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연도분의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1.5>

제240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63.12.14, 1967.11.29, 1973.3.12, 1976.12.31, 1991.12.14, 2001.12.29, 2005.1.5>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3. (생략)

② (생략)

③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6.12.30, 2010.1.1>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1>

구분	과 세 표 준	표준세율
1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20
2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40
3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분세액	구지역 100분의25 군지역 100분의10
4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20
5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100분의30
6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100분의50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생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5, 2010.1.1>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납입관리자) 법 제159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이 절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111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159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라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제110조에 따라 도별로 안분한 지방소비세를 제1항의 기한까지 각 도 금고에 납입하고, 각 도에 법 제159조의7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입 및 안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